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가합52231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 고 1. 태웅건설 주식회사

2. A

3. 주식회사 에코캐피탈

변론 종결 2015. 9. 24.

판결 선고 2015. 10. 15.

주 문

1. 피고 태웅건설 주식회사, A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528,465원 및 그중298,527,373원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5. 4. 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A와 피고 주식회사 에코캐피탈 사이에 2014. 4. 7.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주식회사 에코캐피탈은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2014. 4. 7. 접수 제710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태웅건설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에코캐피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피고 태웅건설 주식회사,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3. 29. 피고 태웅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웅건설'이라 한다)와사이에 피고 태웅건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3억 원, 보증기한 2013. 3. 29.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5. 3. 27.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 및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태웅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태웅건설이 주채무를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한다(제3조 제3항).

② 피고 태웅건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피고 태웅건설, A 및 B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제6조 제1항).

제1호: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태웅건설, A 및 B은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한다(제10조 제1항)

i) 보증채무 이행금액(제1호)

i) 위 i)항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제2호)

(3) 원고는 국민은행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태웅건설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3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태웅건설은 2014. 4. 4.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4. 5. 20. 국민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태웅건설의 대출원리금 채무 301,850,383원(= 대출원금 3억 원 + 이자 1,850,38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4. 5. 20. 피고 태웅건설로부터 3,323,010원을 지급받았다.

(4) 2014. 5. 20. 당시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2) 피고 A의 대물변제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0. 9. 16. 피고 주식회사 애코캐피탈(이하 '피고 애코캐피탈'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액 50억 원, 변제기한 2011. 1. 31.까지로하는 대출약정을

하였다. B과 피고 A는 위 대출약정에 기하여 C이 피고 에코캐피탈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2014. 4. 7. 피고 에코캐피탈과 사이에 C이 위 대출계약에 따라 피고에코캐피탈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 중 원금 624,070,81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5,275,890원 합계 629,346,700원(= 624,070,810원 + 5,275,890원)의 변제를 갈음하여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에코캐피탈에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A는 2014. 4.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7.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71023호로 피고 에코캐피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A의 재산상태

가) 피고 A는 2014. 4. 7.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래 [표 1]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가액의 합계는 815,470,826원이다(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대출원리금이다).

[표 1]

순번	부동산의 표시	가액(원)
1	이 사건 각 부동산	629,346,700
2	광주 동구 D	71,838,900
3	전남 고흥군 E	1,188,176
4	전남 화순군 F	23,952,000
5	전남 화순군 G	23,424,000
6	전남 화순군 H	32,357,000
7	전남 화순군 I	1,149,200
8	전남 화순군 J	6,084,000
9	전남 화순군 K	1,105,800
10	전남 화순군 L	312,480
11	전남 화순군 M	1,528,800
12	전남 화순군 N	316,260
13	전남 화순군 O	3,556,800
14	전남 화순군 P	1,872,000
15	전남 화순군 Q	3,780,400
16	전남 화순군 R	1,366,200
17	전남 화순군 S	514,800
18	전남 화순군 T	1,200,150
19	전남 화순군 U	1,794,150
20	전남 화순군 V	3,042,000
21	전남 화순군 W	2,114,970
22	전남 화순군 X	317,250
23	전남 화순군 Y	1,559,580
24	전남 화순군 Z	1,749,210
합계		815,470,826

나) 피고 A는 2014. 4. 7. 당시 소극재산으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37,146,408,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표 2]

순번	채권자	채무액(원)
1	국민은행	8,568,674,000
2	외환은행	1,588,061,000
3	광주은행	8,886,689,000
4	신용보증기금	983,753,000
5	피고 에코캐피탈	12,030,000,000
6	더블저축은행	490,000,000
7	외환은행	4,599,231,000
합계		37,146,408,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된 2014. 4. 7. 당시 이미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태웅건설이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 태웅건설, A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4. 5. 20. 원고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301,850,383원을 변제함으로써 사후구상금 채권도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가) 관련법리

(1)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10.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대물변제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취소에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태웅건설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에코캐피탈과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014. 4. 7. 당시 피고 A의 재산상태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2) 피고 에코캐피탈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피고 A가 운영하는 C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 코캐피탈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 A가 운영하는 회사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에코캐피탈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피고 A가 운영하는 C의 갹생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A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에코캐피탈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피고 에코캐피탈의 선의 여부

가) 피고 에코캐피탈의 주장

피고 에코캐피탈은 B의 주주이자 채권자로서 C의 갹생을 통해 B을 지원하고자 피고A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 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에코캐피탈의 악의는 추정된다. C이 피고 에코캐피탈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 A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에코캐피탈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피고 에코캐피탈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A와 피고 에코캐피탈이 2014. 4.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에코캐피탈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에코캐피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및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현정, 판사 진영현, 판사 류지미